

경운대학교 계약학과학사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경운대학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 의거 계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산업체 등(이하 “산업체 등”이라 한다)과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 한다.

1.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.
2.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.

제3조(재학 및 수업년한) 계약학과 재학 및 수업 년한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(수업방법 및 장소) ① 계약학과 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② 계약학과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.

제5조(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) 계약학과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점 및 성적인정)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.

제7조(졸업학점) ①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경운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.

③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,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제3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학기당 이수학점)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하고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당 24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최저학점 이하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적대학 학점인정) ① 학생이 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

총 6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해당학과는 학과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점인정표를 편입학생에게 열람시키고 편입학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③ 편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(등록금 납부)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하여 징수한다.

제11조(재학생의 자격부여)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재학생의 자격이 부여된다.

제12조(등록취소) ① 학생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일 전에는 등록취소원을, 입학일 후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의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, 등록금 환불에 관한 제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학칙) ① 학생의 학적은 학칙에 의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학생의 학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산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졸업자격시험)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졸업시험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석사학위과정)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경운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며 학생 선발 및 졸업학점, 학기당 이수학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(학위수여) 학생이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교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7조(증명서 발급) 계약학과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제증명 및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18조(계약학과운영위원회)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준용규정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, 학사운영규정, 기타 학사 관련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, 계약학과 등록금 약정서 등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